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②

제자리걸음 교육부대책, 전국 제각각 처우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해법입니다”

2016. 9.

국회의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은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해법입니다.

국회의원 유은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보수 정권 집권 10년, 서민의 삶이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현상의 중심에는 노동 환경의 악화라는 악조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년의 긴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공부분에서도 비정규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전체 약 40만 명의 학교비정규직들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의원님들은 19대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활동, 교육 현장 관계자들과의 상시적 토론회 개최 등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활동들이 구체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속 시원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상황임을 이번 정책 자료집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고용안정 대책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신규 채용 시 무기계약으로 채용) 에도 불구하고, 1년 또는 2년마다 기간제로 교체 채용하여 고용불안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공무직법 제정 뿐입니다.

전국의 조례로 학교비정규직이 이제 교육공무직으로 불려질 만큼 상황이 나아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별로, 교육공무직으로 구분하는 직종도 천차만별이고, 처우와 고용현황도 들쭉날쭉인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의 학교급식실 조리원은 교육공무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아직도 급식봉사보조 정도로만 대우를 받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20대 국회현장에서도, 가까이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전해주시고, 다양한 자료에 조언과 협의를 아끼지 않고 해주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의 담당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차 례

1.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1
2.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현황	7
3.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현황	15
4. 전국 시도별 제각각 고용대책과 처우현황	23
5. 전국 최하위수준 국립학교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31
6. 주요 직종별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및 임금차별	37
7.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법 제정	57
참고자료	63

Part

1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1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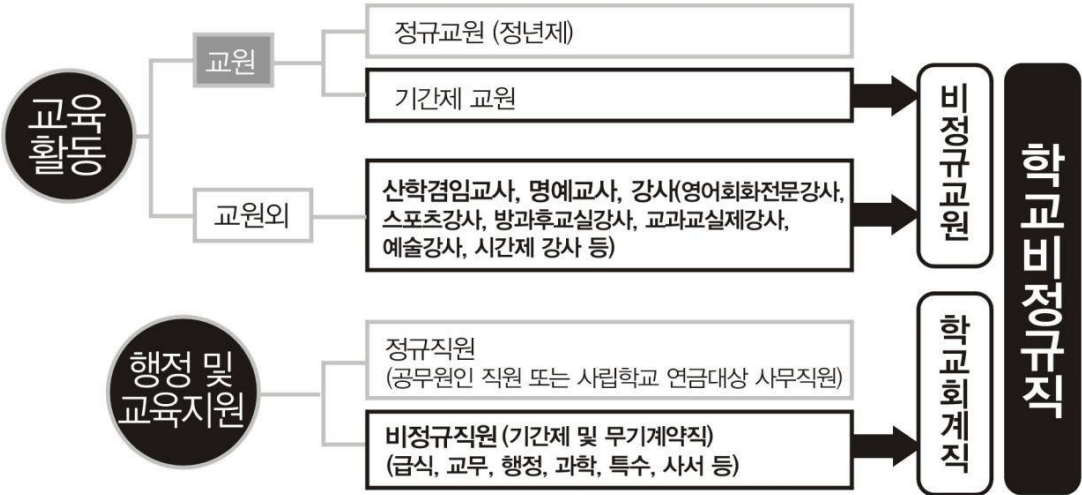
1) 학교비정규직 현황

○ 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은 학교회계직원 141,173명과 비정규직 강사 168,666명, 파견·용역근로자 27,266명, 기간제 교사 42,033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약 40만 명

* 학교회계직원 - 2016년 기준 / *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 - 2015년 기준
* 파견·용역근로자 - 2014년 기준(교육부)

- 학교회계직원의 직종은 약 50여개이며, 조리원 47,714명 (34%), 교무보조 19,478명 (14%), 돌봄전담사 12,058명 (9%), 특수교육보조 8,911명 (6%), 조리사 8,098명 (6%), 영양사 5,204명 (4%) 등
 - 돌봄전담사 3,468명 증가 (최근2년 40%), 국정과제로 사업 확대
 - 교무보조 1,554명 감소 (최근2년 11%), 직종통합으로 인한 인원감축

〈그림 1〉 학교비정규직 구분



<표 1>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인원 (2014~2016년 4월 기준, 교육부)

직종명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2년 증감
교무보조	21,873	20,319	19,478	-2,395
과학보조	4,325	4,165	4,253	-72
전산보조	1,626	1,537	1,506	-120
사서(보조)	4,650	4,602	4,466	-184
사무(행정)보조	9,194	8,923	8,882	-312
시설관리직	3,282	3,704	3,967	685
돌봄전담사	8,590	12,068	12,058	3,468
통학차량보조	2,048	2,306	2,250	202
특수교육보조	7,875	8,781	8,911	1,036
영양사	5,100	5,218	5,204	104
조리사	7,640	7,875	8,098	458
조리원	49,001	48,581	47,714	-1,287
배식보조	4,950	4,803	4,811	-139
교육복지사	1,666	1,717	1,645	-21
전문상담사	3,726	3,849	4,059	333
기타	6,606	3,517	3,871	-2,735
합계	142,152	141,965	141,173	-979

<표 2> 비정규직 강사 현황 (2015년 2월 기준, 교육부 자료)

직종명	합계
영어회화	4,552명
교과교실제	2,122명
산업체우수	1,505명
학교운동부	5,355명
방과후학교	123,627명
다문화언어	476명
스포츠강사	10,462명
예술강사	4,916명
합계	153,015명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가 학교비정규직

<표 3>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2014년 노동부 자료)

기관	기간제	단시간	기타	파견	용역	계
중앙행정기관	16,831	1,671	536	8	6,723	25,769
지방자치단체	47,790	4,592	958	45	11,230	64,615
공공기관	33,140	13,753	900	8,141	56,612	112,546
지방공기업	6,642	1,765	246	306	7,144	16,103
교육청	79,332	18,746	294	72	18,083	116,527
국공립대학	4,471	8,068	106	98	3,478	16,221
계	188,206	48,595	3,040	8,670	103,270	351,781

* 노동부 통계 자료,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서 제외 (정규직으로 구분)

○ 교직원의 41%가 비정규직

<표 4> 교직원 현황 (2015년 교육부 자료)

구분	인원	비율
교사	488,444	53%
공무원	57,434	6%
학교비정규직	379,138	41%
계	925,016	100%

○ 학교회계직원 일반 현황

- (계약형태) 무기계약 비율 82.3% (전년 대비 3.2% 증가)

<표 5>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전환 비율 (2014~2016년 교육부)

연도	합계	무기계약	기간제			무기계약비율
			무기계약 미전환자	1년미만자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2014년	142,152	107,783	4,281	10,231	19,857	75.8%
2015년	141,965	112,309	3,031	8,974	17,651	79.1%
2016년	141,173	116,226	1,622	6,966	16,359	82.3%

- 2015년 현재 (근무형태) 상시·전일근무자가 51,728명 (36.4%), 방학중 비근무자가 69,288명(48.8%), 시간제근무자 20,949명 (14.89%)임
- * 2014년 대비 시간제근무자 1,158명 증가, 상시·전일근무자 838명 감소
- (근속년수) 평균 근속년수는 6.5년 (2014년 5.8년)
- (연령) 평균연령은 45세
- (성별) 여성이 93.4%

2)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대책 (2014~2016년)

-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
 - 1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자는 평가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상시·지속적 업무, 결원 발생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에 대해 다시 비정규직 사용은 원칙적 금지
 - 신설업무라도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무기계약 채용
- 장기근무가산금(1년 2만원씩), 명절상여금 인상, 급식비 도입
 - 일급단가 및 연봉기준일수 폐지, 월급제 체제로 전환
 - * 2013년 12월, 국회 예산 심의에서 장기근무가산금 1년에 2만원으로 인상
 - * 2015년 12월, 국회 예산 심의에서 명절상여금 1년에 100만원으로 인상
- 총액인건비 ‘산정인원’을 초과한 교육청은 ‘패널티’를 부여
 - 교육청별 차등적 재정지원
 - 학교비정규직 현원감축, 유사직종간 통합, 전보·재배치 유도

Part 2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현황

2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현황

- 교육부의 고용안정 대책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신규 채용 시 무기계약으로 채용) 에도 불구하고, 1년 또는 2년마다 기간제로 교체 채용, 고용불안 해결 안 됨
 - 학교회계직원중 기간제는 17.7% (24,947명)
 - 무기계약대상자 중 1년이상 근속자 18.9% (1,622명)
1년미만 근속자 81.1%(6,966명)

-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자, 기간제 근로자의 65.6%
전체 학교회계직원 중 11.6% (16,359명)
 - 돌봄, 통학차량보조, 배식보조 등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제외
 - 교무, 전문상담사 중 일부,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제외

1) 학교회계직중 기간제 17.7%, 정부목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학교회계직원 14만여명중 기간제 근로자는 17.7%인 2만4천여명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정원의 5% 미만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음(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2016.2.18.)
 - 그러나 학교회계직원중 기간제 사용율은 17.7%로 정부의 목표인 5%보다 훨씬 높음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6. 2. 18 /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합동)

○ 금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한다.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정원의 8%

(한시적 업무, 일시·간헐업무 및 업무성격 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상기 5%·8% 범위 내 운영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

<표 6>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인원 현황 (2016년,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지역	총인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국립	539	430	79.8%	109	20.2%
강원	6,872	5,792	84.3%	1,080	15.7%
경기	33,679	28,936	85.9%	4,743	14.1%
경남	9,263	8,032	86.7%	1,231	13.3%
경북	7,665	6,269	81.8%	1,396	18.2%
광주	4,390	3,784	86.2%	606	13.8%
대구	6,849	5,602	81.8%	1,247	18.2%
대전	4,063	3,732	91.9%	331	8.1%
부산	8,106	6,278	77.4%	1,828	22.6%
서울	22,859	16,359	71.6%	6,500	28.4%
세종	1,046	783	74.9%	263	25.1%
울산	3,375	3,060	90.7%	315	9.3%
인천	7,693	5,853	76.1%	1,840	23.9%
전남	6,587	5,467	83.0%	1,120	17.0%
전북	5,821	4,579	78.7%	1,242	21.3%
제주	1,767	1,499	84.8%	268	15.2%
충남	5,691	5,149	90.5%	542	9.5%
충북	4,908	4,622	94.2%	286	5.8%
합계	141,173	116,226	82.3%	24,947	17.7%

2)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임에도 무기계약 미전환 및 기간제 채용이 반복되고 있음

- 기간제 24,947명 중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로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은 8,588명임
 - 1년 이상 근무했으나, 무기계약 전환평가 탈락 및 미실시 등으로 무기계약 미전환자가 34.4% (1,622명)
 - 채용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어야 하나 기간제로 채용한 1년 미만 근속자가 81.1%
 - 이는 1년~2년마다 계약종료, 기간제 반복사용의 악습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2015년 교육부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적

- 2년 근무자 4,195명중, 무기계약전환은 61.3%에 불과(2,571명)
- 1년 근무자 10,286명 중, 무기계약 전환 43.3% (4,457명)
- 신규 채용자 20,745명 중, 무기계약 채용 9.8% (2,041명)

- 교육부 및 교육청의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이 주관적임.
 - 업무(사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학교별로 상시지속성 여부를 판단함
 - (예를 들어) 상시지속적 업무임이 명확한 학교 급식실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신설학교 급식실의 경우에는 개교 이후 최소 2년이 지나야지만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됨

<표 7>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 무기계약 미전환자 현황
(2016년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지역	합계	1년 이상 근무		1년 미만 근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국립	37	4	10.8%	33	89.2%
강원	117	23	19.7%	94	80.3%
경기	2,139	423	19.8%	1,716	80.2%
경남	612	116	19.0%	496	81.0%
경북	406	15	3.7%	391	96.3%
광주	360	83	23.1%	277	76.9%
대구	598	87	14.5%	511	85.5%
대전	46	5	10.9%	41	89.1%
부산	552	92	16.7%	460	83.3%
서울	2,407	443	18.4%	1,964	81.6%
세종	11	0	0.0%	11	100.0%
울산	81	23	28.4%	58	71.6%
인천	100	30	30.0%	70	70.0%
전남	567	134	23.6%	433	76.4%
전북	353	77	21.8%	276	78.2%
제주	23	9	39.1%	14	60.9%
충남	117	31	26.5%	86	73.5%
충북	62	27	43.5%	35	56.5%
합계	8,588	1,622	18.9%	6,966	81.1%

3)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 17,651명 (전체 학교회계직원 중 12.4%)

- 2016년, 학교회계직원 전체 중 11.6%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
-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법 상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제외
 - 돌봄, 통학차량보조, 배식보조 : 대부분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시설관리직 : 대부분 고령자
 - 이 외에 휴직, 파견 등 결원 대체자 등
- 위 사유 이외에 교무, 전문상담사, 사무(행정), 사서등 상시·지속적 업무대상에서도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 많음. 일부 교육청에서 기간제법의 제외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의 완료기간을 정해 무기계약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임

<표 8>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 현황 (2016년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직종명	무기	무기미전환	무기전환제외	무기전환제외 비율
교무보조	16,968	940	1,570	8.1%
과학보조	3,912	251	90	2.1%
전산보조	1,443	59	4	0.3%
사서(보조)	3,919	251	296	6.6%
사무(행정)보조	7,491	673	718	8.1%
시설관리직	1,115	501	2,351	59.3%
돌봄전담사	9,185	486	2,387	19.8%
통학차량보조	1,013	176	1,061	47.2%
특수교육보조	8,132	519	260	2.9%
영양사	4,695	449	60	1.2%
조리사	7,823	203	72	0.9%
조리원	44,331	2,524	859	1.8%
배식보조	411	303	4,097	85.2%
교육복지사	1,524	71	50	3.0%
전문상담사	3,149	526	384	9.5%
기타	1,115	656	2,100	54.2%
합계	116,226	8,588	16,359	11.6%

4) 고용불안 요소

- 주 15시간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인한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전환 제외
 - 초단시간 근무자는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제외 가능, 이를 악용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 체결 강요
 - 대표적으로 초등돌봄의 경우, 1일 2시간 50분 계약서 작성 및 10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주 15시간 미만 계약서 작성
 - 무기계약 미전환으로 인해 해마다 재계약시, 고용불안 심각

- 간접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
 - 돌봄 위탁운영 확대 및 야간당직기사, 급식실 위탁운영
 - 교육청 차원의 인력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불안 심각
 - 동일유사업무에 직접고용으로 운영되는 직종, 직접고용으로 전환 필요

- 강사직종 무기계약 전환 제외
 - 전일제 강사직종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의 경우, 상시·지속적인 업무로써 7~8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제외

- 예산 및 사업축소를 이유로 인원 감축
 - 교육청 예산 축소에 따른 사업 축소 또는 폐지로 인원 감축
 - 2015년, 초등스포츠강사 500명 인원감축

- 10개월, 11개월 계약 반복으로 인한 고용불안

Part

3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현황

3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현황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식대, 상여금 차별 금지) 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은 제외
 - 급식비 8만원, 명절상여금 70만원, 성과상여금 약50만원
-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을 통해 14개 교육청, 2015년부터 급식비, 2016년 상여금 신설
 - 국립 및 14개시도 8만원 / 경북 5만원 / 충남 13만원 / 대구 10만원
 - 상여금 경북, 대구, 인천 및 국립학교 미지급
- 정규직 임금의 60%, 비정규직 임금차별 개선없고 여전히 심각
 - 2014년 57.2%, 2015년 60%
-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일부 직종, 기본급 동결 및 각종 수당 제외

1) 정부비정규직 종합대책 위반, 복리후생 등 차별 여전히 심각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안) (부처합동.2014.12.29)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차별해소 대책이 없어 시도교육청별 격차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

- (복리후생 적용 확대) **비교대상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가이드라인」, '15.上)
 - * (예) 선택적 복지,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등
- (상여금 등 처우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 개선
 - *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상여금 등의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 (현재 1년 이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상여금 지급율은 59.1%, 복지포인트는 56.5% 수준)

○ 노동부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교육기관용)”(2013. 10월 / 고용노동부)

- 상여금 연 80~100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연 30만원 최저기준

<표 9>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당 비교

구분	정규직(공무원)	학교비정규직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8만원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60% X 2회 (80만원~173만원씩)	연 70만원(35만원 x 2회)
정기상여금	평균 약 200만원	45~100만원 (국립,경북,대구,인천 미지급)

<표 10> 학교비정규직 주요 수당 현황

지역	급식비	명절상여금	상여금
국립	8만원	40만원	X
강원	8만원	70만원	49만원
경기	8만원	70만원	50만원
경남	8만원	70만원	100만원
경북	5만원	70만원	X
광주	8만원	70만원	70만원
대구	10만원	70만원	X
대전	8만원	70만원	60만원
부산	8만원	70만원	45만원
서울	8만원	70만원	50만원
세종	8만원	70만원	80만원
울산	8만원	70만원	50만원
인천	8만원	70만원	X
전남	8만원	70만원	50만원
전북	8만원	70만원	50만원
제주	8만원	70만원	55만원
충남	13만원	70만원	50만원
충북	8만원	70만원	50만원

2) 정규직 임금의 60%에 불과, 차별개선효과 없어

- 정규직 임금의 60%,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심각
 - 정규직 : 호봉제로 기본급인상/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으로 근속1년에 매월 약 8만원이상 임금 자동 상승
 - 학교비정규직 : 장기근무가산금 1년에 2만원 인상 / 상한 31만원

<표 11> 2016년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비교

년 차	영양사			교무(상시전일근무자)			조리원(방학중비근무자)		
	교사	비정규직	비율	공무원	비정규직	비율	공무원	비정규직	비율
1	2,760,228	1,945,553	70.5%	1,970,193	1,745,283	88.6%	2,040,193	1,387,409	68.0%
2	2,825,568	1,945,553	68.9%	2,051,349	1,745,283	85.1%	2,121,349	1,387,409	65.4%
3	2,896,246	1,945,553	67.2%	2,137,912	1,745,283	81.6%	2,207,912	1,387,409	62.8%
4	2,966,738	1,995,553	67.3%	2,230,541	1,795,283	80.5%	2,300,541	1,437,409	62.5%
5	3,039,061	2,015,553	66.3%	2,328,553	1,815,283	78.0%	2,398,553	1,457,409	60.8%
6	3,208,791	2,035,553	63.4%	2,478,617	1,835,283	74.0%	2,548,617	1,477,409	58.0%
7	3,330,373	2,055,553	61.7%	2,579,483	1,855,283	71.9%	2,649,483	1,497,409	56.5%
8	3,453,234	2,075,553	60.1%	2,678,595	1,875,283	70.0%	2,748,595	1,517,409	55.2%
9	3,577,838	2,095,553	58.6%	2,775,303	1,895,283	68.3%	2,845,303	1,537,409	54.0%
10	3,702,895	2,115,553	57.1%	2,869,883	1,915,283	66.7%	2,939,883	1,557,409	53.0%
11	3,844,301	2,135,553	55.6%	2,972,147	1,935,283	65.1%	3,042,147	1,577,409	51.9%
12	3,954,943	2,155,553	54.5%	3,047,170	1,955,283	64.2%	3,117,170	1,597,409	51.2%
13	4,076,328	2,175,553	53.4%	3,119,235	1,975,283	63.3%	3,189,235	1,617,409	50.7%
14	4,186,733	2,195,553	52.4%	3,189,170	1,995,283	62.6%	3,259,170	1,637,409	50.2%
15	4,309,444	2,215,553	51.4%	3,256,028	2,015,283	61.9%	3,326,028	1,657,409	49.8%
16	4,451,209	2,235,553	50.2%	3,340,757	2,035,283	60.9%	3,410,757	1,677,409	49.2%
17	4,573,093	2,255,553	49.3%	3,404,065	2,055,283	60.4%	3,474,065	1,697,409	48.9%
18	4,695,094	2,255,553	48.0%	3,462,995	2,055,283	59.3%	3,532,995	1,697,409	48.0%
19	4,817,333	2,255,553	46.8%	3,520,860	2,055,283	58.4%	3,590,860	1,697,409	47.3%
20	4,944,896	2,255,553	45.6%	3,576,003	2,055,283	57.5%	3,646,003	1,697,409	46.6%

* 기본급 및 각종수당(교통,급식,명절)등 포함하여 연평균 월급여로 계산

- 차별률 제자리 걸음, 차별해소효과 없어(2015년 60%, 2014년 57.2%)

3) 일부 직종, 처우개선 수당 미지급 및 기본급 동결

- 교육부의 보수표 (기본급 1,546,960원 또는 1,727,220원)를 적용받지 않는 일부 직종(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처우개선 수당(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장기근무가산금, 명절상여금 등) 미지급
 - 노조의 교섭으로 일부 지역별로 일부 수당 지급, 지역별로 편차 매우 큼
 - 전문 자격을 요구하지만, 기본급 인상 제외 및 각종수당 미지급

- 지역별로 처우가 천차만별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5. 전국 시도별 제각각 고용대책과 처우현황] 참조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임금 차별

- 1년 미만 계약자 및 주 15시간 미만자, 각종 처우개선 수당 적용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차별 금지 조항)
 - 15시간 미만, 최소한 시간비례로 모든 수당 지급해야 함

- 지역별로 처우가 천차만별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5. 전국 시도별 제각각 고용대책과 처우현황] 참조

5) 방학중 임금 미지급 및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도

- 월급제 시행으로 임금지급 방식 변경, 방학 중 월급 미지급
 - 연 총액의 1/12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월급제 방식으로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방학이 속한 달은 월급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음

- 방학 중 생활안정대책 시급히 필요함

<표 12> 근속 5년 조리원, 방학중 임금

월	기본급	수당	계
15년 8월	387,580	139,032	526,612
16년 1월	0	90,000	90,000
16년 2월	621,470	167,286	788,756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도, 장기근속자 임금차별

- 장기근무가산금 근속 3년에 5만원부터 1년에 2만원씩 증가, 근속 16년 이상자는 동일하게 31만원만 지급, 상한제도 운영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도는 13년 이상 장기근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 및 경력의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써 또 다른 차별에 해당

* 일부 지역, 노조의 임금교섭을 통해 상한 35~39만원 (18~20년) 으로 확대

Part 4

**전국 시도별 제각각 고용대책과
처우현황**

4 전국 시도별 제각각 고용대책과 처우현황

1) 시도별 조례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인 고용대책, 인력관리

- 모든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 직접고용 등에 관한 조례’등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용, 무기계약전환, 근로조건등이 천차만별고, 일부 직종은 학교장에게 채용권 위임으로 인해 여전히 고용불안 문제 발생

<표 13> 지역별 직접고용 제외 예시

지역	학교장 채용 위임
대구	사서, 상담사, 교육복지사 등 5개 직종 제외한 전 직종
전남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행정사 4개 직종 제외한 전 직종
제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 이외의 직종

- 무기계약대상 직종을 교육청별 정하고 있어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무기계약 제외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 대구시교육청
 - 3. 채용권 구분에 따른 인력관리
 - 가. 교육감 직접 채용 직종
 - 사서, 교육(상담)복지사, 상담사, 평생교육사
 - ☞ 별도 안내 시 까지 퇴직 등 발생에 따른 결원 보충 없음(한시적 인력 포함)
- ◆ 전남도교육청
 - 무기계약 대상 직종이 연도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채용 전면금지
 - 연(학기)말 과원을 대비하여 당해년 결원 기간동안 결원대체를 채용하고 연(학기)말 과원 기관(학교)으로의 전환 조정배치 이후 신규채용 결정
- ◆ 경북도교육청
 - ①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경우 결원상태로 유지(신규채용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무행정사 교당 1명,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반드시 필요한 직종의 경우“교육감 승인”후 결원 보충

- 노동기본권인 병가, 휴직등 기본적 근로조건과 무기계약대상조차 시도별 제각각으로 규정함
 - 공무원은 유급병가 60일, 육아휴직3년 등이 부여되지만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이직 및 전근시 퇴사후 재입사절차를 겪고 있음.

<표 14> 2016년 시도별 주요 근로조건 비교

지역	유급병가일	육아휴직기간	연차휴일 (방학비근무자)	퇴직금적립	무기계약전환 직종
국립	14일	1년	10일	학교	13여개
강원	30일	3년	12일	지원청	41개
경기	21일	2년	10일	학교	20개
경남	30일	3년	12일	학교	31개
경북	16일	3년	10일	학교	15개
광주	20일	1년	12일	지원청	37개
대구	14일	3년	10일	학교	24개
대전	21일	1년	10일	학교	12개~20개
부산	21일	3년	12일	학교	37개
서울	14일	3년	11일	학교	25개
세종	60일	3년	12일	학교	
울산	21일	3년	12일	교육청	30여개
인천	21일	1년	10일	학교	18개
전남	14일	3년	11일	지원청	21개
전북	60일	2년	10일	지원청	21개
제주	21일	1년	10일	학교	27개
충남	21일	3년	12일	학교	
충북	30일	3년	10일	학교	29개

2) 시도별 교육청의 개선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비정규직 처우

-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전가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악화, 시도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업무와 직종이라도 시도별 학교비정규직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시도별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더불어 교육부 및 교육청 내에서 인력관리 총괄부서 확충과 개선대책이 필요함.

<표 15> 학교비정규직 주요 수당 현황

지역	급식비	복지포인트	상여금
국립	8만원	30~40만원	X
강원	8만원	30+20만원	49만원
경기	8만원	35만원	50만원
경남	8만원	25만원 + 보험료	100만원
경북	5만원	40만원	X
광주	8만원	35+15만원	70만원
대구	10만원	30만원	X
대전	8만원	40+10만원	60만원
부산	8만원	45만원	45만원
서울	8만원	35만원	50만원
세종	8만원	40+10만원	80만원
울산	8만원	45만원	50만원
인천	8만원	30+10만원	X
전남	8만원	35+10만원	50만원
전북	8만원	40만원	50만원
제주	8만원	30+10만원	55만원
충남	13만원	40+10만원	50만원
충북	8만원	30만원	50만원

3) 지역별 천차만별 직종별 처우, 보수표 적용 제외직종

- 교육부의 보수표 (기본급 1,546,960원 또는 1,727,220원)를 적용받지 않는 일부 직종(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처우개선 수당(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장기근무가산금, 명절상여금 등) 미지급
- 노조의 교섭으로 일부 지역별로 일부 수당 지급, 지역별로 편차 매우 큼
- 전문 자격을 요구하지만, 기본급 인상 제외 및 각종수당 미지급

<표 16> 기본급 인상을 3% 적용 현황

지역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국립	X	대상없음	대상없음	대상없음
강원	○	○	X (1,626,740원)	X
경기	X	○	X	○
경남	○	○	X	X
경북	○ (영양사보수표)	X	X	X
광주	○ (영양사보수표)	○	X	X
대구	○	○	X	X
대전	X	○	X	X
부산	○	X (1.5%인상)	○ (실무사보수표)	X
서울	○ (영양사보수표)	○	X	X
세종	○ (영양사보수표)	X	X	X
		○ (영양사보수표)		
울산	○	○	X	X
인천	○	○	X	X
전남	○	○	X (1,699,500원)	X
전북	대상없음	○	X	X
제주	○ (실무사보수표)	X	○ (실무사보수표)	X
		○ (실무사보수표)		
충남	○ (영양사보수표)	X	X	X
		○ (영양사보수표)		
충북	○ (영양사보수표)	○	X	X

* 기본급(평균) - 전문상담사 170만원, 교육복지사 180만원, 스포츠강사 158만원, 영전강 215만원

<표 17> 전문상담사 수당 지급 현황 (2016년 기준)

지역	명절	맞춤형	교통	가족	자녀 학비	장기 근속	급식비	상여금
국립	일부X	X	X	X	X	X	○	X
강원	○	○	X	○	○	○	○	○
경기	○	X	X	X	X	X	X	○
경남	○	○	○	X	X	X	○	○
경북	○	○	○	○	○	○	○	X
광주	○	○	○	○	○	○	○	○
대구	X	○	X	X	X	X	○	X
대전	○	○	○	○	○	○	○	○
부산	○	X	X	X	X	X	○	○
서울	○	○	○	○	○	○	○	○
세종	○	○	○	○	○	○	○	○
울산	○	○	○	○	○	○	○	○
인천	X	X	X	X	X	X	○	X
전남	○	○	○	○	○	○	○	○
제주	○	○	○	○	○	○	○	○
충남	○	○	○	○	○	○	○	○
충북	○	○	○	X	X	X	○	○

<표 18> 교육복지사 수당 지급 현황 (2016년 기준)

지역	명절	맞춤형	교통	가족	자녀 학비	장기 근속	급식비	상여금
강원	○	○	X	○	○	○	○	○
경기	○	○	○	○	○	○	○	○
경남	○	○	X	X	X	○	○	○
경북	○	○	X	X	X	○ (3년1만원)	X	X
광주	○	○	X	X	X	○	○	○
대구	○	○	X	X	X	○	○	X
대전	○	○	○	○	X	○	○	○
부산	○	○	○	○	○	○	○	○
서울	○	○	○	○	○	○	○	○
세종	○	○	○	○	○	○	○	○
울산	○	○	X	X	X	○	○	○
인천	○	○	X	X	X	○ (1년1만원)	○	
전남	○	○	○	○	○	○	○	○
전북	○	○	X	X	X	○	○	○
제주	○	○	X	X	X	○ (2년1만원)	X	○
	○	○	○	○	○	○	○	○
충남	○	○	○	○	X	○ (2년1만원)	X	X
	○	○	○	○	○	○	○	○
충북	○	○	X	X	X	○	○	○

4) 지역별 천차만별 고용형태별 처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1년 미만 계약자 및 주 15시간 미만자, 각종 처우개선 수당 적용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차별 금지 조항)
 - 15시간 미만, 최소한 시간비례로 모든 수당 지급해야 함

<표 19> 단시간근무자 시간비례 수당 지급 현황

지역	시간비례 적용여부	시간비례 제외
국립	시간비례	급식비
강원	전액지급	
경기	전액지급	
경남	시간비례	가족,자녀 학비 돌봄-급식비,교통
경북	시간비례	명절
광주	시간비례 / 2014년이후 입사자	장기근속,직무수당 이외수당
대구	시간비례 / 2014년이후 입사자	명절,가족,자녀 학비,맞춤형복지
대전	전액지급 (맞춤형복지 시간비례)	
부산	시간비례 / 2014년이후 입사자	급식비 돌봄,방과후 (맞춤형복지 제외)
서울	주40시간 이상 지급	급식비,명절
세종	시간비례	급식비,교통,자녀 학비
울산	시간비례	급식비,교통,상여금
인천	시간비례	
전남	전액지급	
전북	주40시간 이상 지급	
제주	시간비례 (급식보조원-가족,자녀 학비 미지급)	명절,상여금,맞춤형복지
충남	시간비례	명절,상여금,맞춤형복지
충북	전액지급	

Part

5

전국 최하위수준 국립학교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5

전국 최하위수준 국립학교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 국립학교 수 41개교, 학교회계직원 539명
- 공·사립학교에 비해 국립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열악함
 - 명절상여금 미인상 (국회 2016년 정부예산 결정사항 미이행)
 - 정기상여금 0원 (시도교육청 평균 연50만원)
 - 전문상담사, 특수학교 특수실무사 4년째 임금 동결 및 각종 수당 미지급, 학교별로 임금 제각각
- 노동조합과 임금·단체교섭, 2013년부터 4년째 240회 교섭만 진행 중
 - 14개 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15개 교육청 임금협약 체결

1) 노동조합과 4년째 교섭만 240회!

- 실무교섭 26회, 실무협의 89회, 직종교섭 9회
- 14개 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15개 교육청 임금협약 체결
- 기재부 예산 협의를 이유로 임금교섭 난항
- 4년 동안 노동조합과 교육부 장관 면담 단 1회 진행

2) 교육부 처우개선안 명절휴가비 개선,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립 학교에는 미적용

- 2016년 교육부 처우개선 대책으로 명절휴가비 연70만원, 영양사 면허가 산수당이 17개 시·도교육청 공·사립학교에서 지급됐으나 국립학교 미시행
- 국회 2016년 예산 부대의견 의결 사항으로 2017년 명절휴가비는 연 100

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교육부의 2017년 예산은 명절휴가비가 연 70만원만 책정됨(2016년 설날 명절휴가비 상향지급도 불가능 상황임)

3) 전국 꼴등수준 국립학교 처우, 개선 시급

- 국립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처우개선은 항상 공립학교에 뒤쳐진 꼴지 수준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정기상여금(연 평균 50만원) 신설되는 등 처우가 개선되었지만, 국립학교는 전혀 없는 상황
- 임금이외, 근무시간, 휴일, 각종 휴가, 유급평가 등에서도 공립학교보다 뒤쳐져 있음

4) 보수표 제외 직종 임금, 수당, 복리후생 차별문제 심각

- 국립특수학교 5개교 특수교육실무사 이중적 차별대우
 - 기본급 인상도 제외되고, 각종 처우개선수당 적용도 제외되고 있음. 학교 회계직 보수표 적용으로 처우개선 시급.

<표 20> 국립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임금 및 수당지급 현황

학교명	기본급	수당						
		명절	맞춤형 복지	교통	가족	자녀 학비	장기 근속	급식비
서울맹학교	1,502	60만원	30만원	X	X	X	X	○
서울농학교	1,502	60만원	30만원	X	X	X	X	○
한국선진학교	1,502	60만원	30만원	X	X	X	X	○
한국경진학교	1,502	60만원	30만원	X	X	X	X	○
한국우진학교	1,502	60만원	30만원	X	X	X	X	○

○ 전문상담사 국립학교별 제각각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 개선 시급

- 30개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근무하나, 그 처우는 학교별로 제각각으로, 기본급은 150만원~167만원, 처우개선수당은 급식비만 공통으로 지급.

<표 21> 국립학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임금 현황 (교육부 2016.9)

학교명	기본급 (월/천 원)	수당						
		명절	맞춤형 복지	교통	가족	자녀 학비	장기 근속	급식 비
강원대부설고	1,500	40만원	X	X	X	X	X	○
경북대부설중	1,600	40만원	X	X	X	X	X	○
경북대부설초	1,612	40만원	X	○	X	X	X	○
경상대부설고	1,600	40만원	X	X	X	X	X	○
경상대부설중	1,600	40만원	X	X	X	X	X	○
경인교대부설초	1,690	40만원	X	X	X	X	X	○
공주교대부설초	1,600	40만원	X	X	X	X	X	○
공주대부설중	1,645	40만원	X	X	X	X	X	○
광주교대광주초	1,500	40만원	X	X	X	X	X	○
광주교대목포초	1,520	40만원	X	X	X	X	X	○
교원대부설고	1,600	40만원	X	X	X	X	X	○
교원대부설중	1,600	40만원	X	X	X	X	X	○
대구교대대구부설초	1,575	40만원	X	X	X	X	X	○
대구교대안동부설초	1,677	40만원	X	X	X	X	X	○
부산교대부설초	1,600	40만원	X	X	X	X	X	○
부산대부설고	1,600	40만원	X	X	X	X	X	○
전남대부설고	1,650	40만원	X	X	X	X	X	○
전남대부설중	1,600	40만원	○	X	X	X	X	○
전북대부설고	1,500	40만원	X	X	X	X	X	○
전주교대군산부설초	1,585	40만원	X	X	X	X	X	○
전주교대전주부설초	1,610	40만원	X	X	X	X	X	○
제주대부설중	1,520	40만원	X	X	○	○	X	○
제주대부설초	1,600	40만원	X	X	X	X	X	○
진주교대부설초	1,600	40만원	X	X	X	X	X	○
청주교대부설초	1,600	40만원	X	X	X	X	X	○
춘천교대부설초	1,654	40만원	X	X	X	X	X	○
충북대부설고	1,600	40만원	○	X	X	X	X	○
충북대부설중	1,600	40만원	○	X	X	X	X	○
계 (28개교)	1,594	28교	3교	1교	1교	1교	0교	28교

* 2016년 9월 1일 서울교대부설초, 교원대부설초에 위클래스 신설되어 총 30개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음.

5) 제주지역 급식실 조리원들의 이중적 차별 문제 심각

: 보수지급기준 위반 및 월급제 미전환 문제 등

- 14년~16년 교육부의 처우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직속 국립학교인 3개교(제주교대부설초등학교, 제주대사범대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의 조리종사원(급식보조원)의 임금체계는 시급제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 제주 학교비정규직 인원의 46%인 787명에 달하는 조리원(급식보조원)은 학부모자원봉사자의 형태로 출발하여 2012년부터 전국 유일하게 일7시간 근무 시급제인 ‘급식보조원’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함. 2013년 교육부의 월급제 전환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급제를 유지함으로써 저임금, 수당차별 등 이중적 차별에 놓여있음.

<표 22> 국립학교 조리원과 급식보조원 임금비교 (15년~16년 기준)

구분	타 국립학교 조리원	제주 국립교 조리원
업무	조리,세척, 전처리 등 조리실무 전체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	일 7시간
기본급	15년) 1,501,900원 16년) 1,546,950원	약 951,720원 (시급6,180원x7시간x약22일)
급식비	8만원	7만원
교통비	6만원	없음
위협수당	5만원	없음
장기근무가산금	5만원~31만원	43,750원 (경력반영없이 정액지급)
가족수당	약 8만원	없음
자녀학비보조수당	연 200만원	없음
명절상여금	연 40만원	40만원
맞춤형복지	연 30만원	30만원
임금 차별금액	연간 약 300 만원 차별	

Part 6

**주요 직종별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및 임금차별**

6

주요 직종별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및 임금차별

1) 초등돌봄전담사, 초단시간 근로계약과 외주위탁운영 문제

- 예산대책없는 무리한 돌봄교실 양적 확대정책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초등 돌봄교실 질저하 초래
 - ‘정부’는 1회성 예산지원 정책으로 늘어난 재정수요 ‘교육청에 전가’, ‘교육청’은 ‘비정규직 돌봄전담사에게 전가’하는 구조

<표 23>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2014-2015년 교육부 자료)

지역	2014년도				2015년도			
	총 학교수 (개)	돌봄운영 학교수 (개)	돌봄 교실수 (실)	이용 학생수 (명)	총 학교수 (개)	돌봄운영 학교수 (개)	돌봄 교실수 (실)	이용 학생수 (명)
계	6,104	5,938	10,966	221,310	6,166	5,972	12,380	239,798

- 전체 돌봄전담사 중 초단시간(주15시간미만) 근무자, ‘4명 중 1명’꼴임
 - 2015년 기준, 15시간 미만 초등돌봄전담사가 2,601명(초단시간근무자 비율 27.4%)
 - 박근혜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전담인력의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한 인건비 예산확보 없이 단순히 돌봄교실 숫자만 늘리는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가 대폭 확대됨
 - 14~15년 신규채용 인력 중 상당수는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고 있음
 - ☞ 경기도의 경우 신규채용인력 대부분을 초단시간 근무자로 채용
 - 초단시간 근무자 우선적 인원감축 및 외주업체 전환(15년 721명 감원)
 - 특히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비율이 높은 지역
 - ☞ 전북 100%, 세종 97.4%, 경북 72.5%
 - ☞ 모범사례, 충남교육청 초단시간근무제 폐지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

- 초등돌봄교실에 탈법·편법적 초단시간제 고용 실태
 - 고용불안을 악용하여 재계약시점(주로 2월경)에 초단시간 계약 전환강요
 - 신규인력 채용시 노동관계법 적용 회피 목적으로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제로 근로계약
 - 초단시간 근무자로 만들기 위한 꼼수계약 : 10분계약서 및 2중 근로계약서
 - ☞ 출퇴근 시간을 10~30분씩 줄여서 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 체결
 - ☞ 토요일돌봄교실계약을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체결
 - ☞ 일자리 쪼개기로 돌봄교사 근로조건 저하, 요일마다 다른 돌봄교사

- 일을 하지만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무료노동
 - 출근시간 전 준비시간, 퇴근시간 후 마무리/정리시간 근로계약하면서도 임금 지급하지 않고 무료 봉사노동 강요

- 돌봄교실 외주위탁 문제 심각
 - (전국)초등돌봄의 경우 돌봄교실의 외주위탁 운영에 따른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가 2015년기준 2013년 대비 5배 넘게 증가함(2013년 245명→ 2015년 1,309명)
 - 위탁 운영의 문제점
 - ☞ 노동관계법(파견법) 위반 소지 :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위탁업체 소속 돌봄전담사에게 직접적인 지시/감독권 행사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됨
 - ☞ 돌봄교실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함
 - ☞ 이중관리로 인한 비효율과 관리비용 증가
 - ☞ 돌봄전담사 고용불안 심각(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로 매년 고용불안 겪음)
 - ☞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각종 수당(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상여금 등)에서 제외됨. 따라서 동일 노동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과 수당제외라는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
 - ☞ 학생, 학부모도 모르게 “직접고용”, “간접고용” 돌봄교실로 구분됨

- 전국 제각각 임금체계, 전문인력에 맞지 않는 저임금 문제점
 - 돌봄전담사의 임금체계는 시급제, 월급제(보수표 적용기준은 서울 등 일부지역은 영양사/사서보수표, 그 외 대부분 지역 실무사보수표 적용)
 - 단시간 근무자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 차별적 지급
 - 시간비례에 따른 임금지급기준이 부적절한 수당(예, 교통비, 급식비 등)에도 시간비례 지급

2) 전문상담사

- 전남, 10개월 계약 반복으로 인한 고용불안
- 전남, 경북, 서울, 인천 등 무기계약 전환 제외 및 기간제 채용으로 고용불안

<표 24> 전문상담사 근로계약 현황 (2015년 교육부 자료)

지역	무기계약	기간제	계	무기계약 비율
국립	13	5	1	68.4%
강원	265	2	3	98.1%
경기	318	86	108	62.1%
경남	291	100	17	71.3%
경북	88	129	20	37.1%
광주	116	17	8	82.3%
대구	149	17	9	85.1%
대전	96	4	13	85.0%
부산	152	15	11	85.4%
서울	208	264	41	40.5%
세종	33	0	3	91.7%
울산	123	17	1	87.2%
인천	88	63	50	43.8%
전남	63	120	96	22.6%
전북	48	34	24	45.3%
제주	70	2	4	92.1%
충남	202	34	6	83.5%
충북	190	1	11	94.1%
합계	2513	910	426	65.3%

○ 전문자격증 요구하는 직종임에도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낮은 수준 임금 지급

- 전문상담사 자격 요건

1. 전문상담교사 자격소지자,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자격소지자 전문상담사(사)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산업 인력관리공단)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2급 이상
2. 사회복지사 1급 이상,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 2012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영양사 직종보다 임금이 높았지만, 4년째 임금동결 및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임금격차 심해짐

<표 25> 학교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임금 비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자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무	1,422,580	1,446,920	1,501,903	1,546,950
영양사	1,588,350	1,615,530	1,676,920	1,727,220
전문상담사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 교무, 영양사 등 학교비정규직 2013년부터 수당신설 평균 약 30만원 / 전문상담사 수당 0원

○ 동일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임금차별 심함

- 전문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에 맞게 영양사/사서 보수표로 통일, 서울, 대전, 광주, 세종, 경북, 충남,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영양사·사서 보수표 또는 준하는 처우 적용

3) 초등스포츠강사

○ 2008년,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초등체육수업의 정상화 지시, 국가정책 과제인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 후 확대 시행

* 스포츠강사 만족도(11.4월, 문화부 설문조사): 95.5%(교사 94.6%, 학생 96.4%)

*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

초클럽 지도 등 체육관련 행사지원 등 학교체육 관련 업무 / 1일 8시간 근무,
주21시수 수업지도

* 대부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초등스포츠강사 고용불안 심각(2013년 대비 2016년 1,702명 감원)

<표 26> 초등스포츠강사 시도별 인원현황 (2016년 3월 기준. 교육부)

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800	2,906	2,408	2,098
서울	584	333	342	316
부산	92	75	64	63
대구	164	132	50	50
인천	229	208	114	69
광주	89	80	69	54
대전	132	80	80	80
울산	102	79	66	56
세종	22	21	21	23
경기	161	150	150	139
강원	299	299	295	290
충북	206	184	120	103
충남	311	210	175	125
전북	310	150	149	148
전남	292	278	211	190
경북	273	200	136	70
경남	421	320	299	271
제주	113	107	67	51

○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 법제처 해석 (고용노동부 질의, 2014. 5. 12), 학교운동지도자의 경우,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학교운동지도자만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간제법 적용이 제외되고, 그 외의 자격기준으로 채용된 학교운동지도자는 기간제법이 적용, 즉 무기계약 전환 대상
- 법제처,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 이미 8년을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함. 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도 기간제법 제외 대상자이지만 상시·지속적 업무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음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4. 10. 28)

☞ 법제처 해석 이후,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해 자격기준을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로 개정, 지난 7년 동안 스포츠강사의 최우선 자격 요건인 교사 자격증 기준마저 폐지

개정전	개정후
<p>제4조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p> <p>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p> <p>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p> <p>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p> <p>나.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p> <p>다.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p> <p>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또는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p> <p>3.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인 사람</p> <p>4.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제4조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p> <p>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p> <p>1~4호 삭제</p>

○ 7년간 사실상 임금동결, 학교비정규직과 임금인상을 및 기본급 비교

<표 27> 기본급 임금인상율 비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비정규직	0%	0%	5.1%	3.5%	2.8%	1.7%	3.8%	3.0%
스포츠강사	0%	0%	0%	0%	0%	5%	0%	0

- 각종 처우개선 수당 차별
 - 교육부 전국적인 통일적 보수지급기준 없음
 - 노동조합과 시도교육청과의 교섭만으로 일부 처우개선 수당 지급받음

4) 영어회화전문강사

- 2009년부터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4년 동안 기간제로 채용해 왔음
 -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개요
 - * 도입 : 2009년 전통적 문법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회화 중심의 영어수업을 담당. 초등 영어 수업시수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임용됨
 -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42조
 - * 근로계약 : 통상 3월 - 다음해 2월까지 1년계약, 동일교 4년연속 근무자는 신규선발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속 근무가능

○ 2013년 대비 2016년 2,386명 감원, 2016년 3,700여명만 남아

<표 28> 영어회화전문강사 년도별 인원현황 (교육부 자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731	6,255	6,104	6,025	5,427	4,552	3,718

- 인원감원 주요 이유 :
 - ☞ 인위적 감원 : 주요사유는 수업시수부족(영전강이 아닌 교원신분에게 수업시수 우선 배정)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소규모 학교의 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교육청의 인력감원 정책(4년 만료자 재고용 제한방식의 인력감원 정책)
 - ☞ 자연감원 :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 퇴직(중도퇴직, 재계약 미희망)

○ 연속 4년근무자, 재계약율 66%에 불과

<표 29> 4년 기간제고용 상한 만료자 재고용 현황 (13년~15년 교육부자료 분석)

지역	4년 만료자 인원	재임용 인원	비율
서울	352	219	62.22%
부산	188	137	72.87%
대구	119	93	78.15%
인천	96	61	63.54%
광주	83	53	63.86%
대전	98	71	72.45%
울산	57	40	70.18%
세종	6	3	50.00%
경기	309	185	59.87%
강원	95	68	71.58%
충북	81	67	82.72%
충남	106	70	66.04%
전북	128	72	56.25%
전남	128	89	69.53%
경북	155	91	58.71%
경남	147	104	70.75%
제주	56	34	60.71%
계	2,204	1,457	66.11%

○ 중앙노동위원회의 등의 부당해고 판정

- 광주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 2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015. 11. 18.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7. 15.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관련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

- 부산, 대구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016. 6. 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같은해 7.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 하라”고 광주와 같이 판정함

○ 국가 기관들의 고용안정 대책 수립 촉구

- 2013. 8. 30.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감직접고용 및 무기계약전환 등 고용안정대책 마련 권고(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불수용)
- 2013. 10. 14.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답변, 사용자는 교육감이고, 상시지속적 업무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에 대하여 교육당국과 협의하겠음

○ 차별적 처우개선 문제

- 기본급 인상률 적용제외 : 학교현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임금인상률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수당체계 및 복지제도 개선(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이고, 전일제 근무자로서 학교회계직과 근무형태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임금은 연봉제 방식으로 기본급만 지급될 뿐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 근속년수가 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장기근무자의 사기 저하 문제 개선 필요(호봉제 또는 장기근무가산금 제도 도입 필요)
- 제도도입 당시 급여수준은 교사 초임 연봉액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임금인상률 적용배제,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미적용 등으로 교사 초임 대비 연봉액이 연 약 600만원 이상 낮음(2016년 영전강 연임금총액 2,580만원, 교사초임 연임금총액 약 3,200만원). 우선적으로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을 동일적용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영전강의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 필요

○ 교육부,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없음

- 2016년 신설한 강사대책팀마저 해체시킴

5) 야간당직기사

○ 학교 야간당직기사 실태 개요

구분	내용
직종(업무)	당직전담 기사(야간시간과 휴일에 학교 시설 보호 업무, 과거 교원 등이 야간 숙직업무와 휴일 일숙직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도입됨)
인원(고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경비학교를 제외한 유인경비학교(7,627개교) 중 직접고용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6.6%(507개교)에 불과하여 대부분(93.4%, 7,123개교)이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 유인경비학교 중 2인이상의 야간당직기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4.3%(325개교)에 불과하여 대부분(95.7%, 7,301개교) 나홀로 근무형태로 학교야간당직을 하고 있음 • 학교당직기사 중 73.5%인 5,817명이 66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6.7%) 근무하고 있어 대표적인 고령자 일자리임
임금	월급여기준 100만원 내외 수준(학교별, 지역별로 편차)
노동시간 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16시간 토, 일요일 및 공휴일 24시간 근무(휴일 없이 근무, 명절 낀 경우 6박7일이상 연속근무를 하기도 함) • 연간평균근로시간(평일 245일 × 16시간 = 3,920시간) + (휴일 120일 × 24시간 = 2,880시간) = 합계 약 6,800시간 • 주1일 또는 월1-2일 휴일을 실시하지만,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음(쉬게 될 경우 일당이 깎여서 임금손실 발생) • 최저임금 위반 회피하려고 근로계약서상 1일 평균근로시간은 5시간 내외로 정해놓음

○ 올해 추석도 학교야간당직기사들에겐 학교는 사실상 감옥

<7박8일 근무 실제사례, 서울00초등학교 야간당직기사 A씨 사례>

☞ 9월13일(화) 오후4시30분부터 9월20일(화) 오전08시30분까지 교박 7박8일 연속 근무(연속 160시간) 근무

☞ 대부분 9/13(화) 오후4시30분부터 9월19일(월) 오전8시30분까지 6박7일 연속근무

- 평일 16시간, 휴일24시간, 연간 약6천시간(월 약5백시간)을 학교에서 일하지만 임금은 월1백만원 수준, 그나마 연차휴가수당도 월급에 포함

<위 서울00초등학교 야간당직기사 A씨 사례>

- ☞ 실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평일 4.5시간, 휴일 6시간에 불과하여 월 1백1십만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음(그 외 수당 없음)
- ☞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고 휴일사용시 연차휴가수당에서 임금 공제

- 무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14. 2. 24, 조치기한 2015년2월)

☐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 개선

- 2인 이상 근무자가 숙직과 일직을 **교대근무하게 하거나 격일제 근무하는 방안** 마련
 - 학교 당직 근무 관련 사업발주(공고) 시 공고문,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계약서 등에 교대(격일) 근무 명문화

☐ 학교당직기사의 보수여건 개선

① 적절한 근로인정시간 확보 방안 마련

- 장시간의 구속시간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업 및 임무(순찰 등) 부여를 통한 **적절한 근로인정시간(근로계약상 근무시간) 확보 방안** 마련

< 예시 >

- 사업발주 시 계약조건(일반 또는 특수)에 과업(순찰, 문단속 등)을 시간대별로 세부적으로 부여하고 최소 실제 근무시간(근로인정시간) 명시
 - ※ 평일, 토·일요일(공휴일, 휴업일 포함)별로 당직기사의 과업(임무)을 학교의 현실에 맞게 적정 부여하여 최소 근로인정시간 확보
- 용역계약서(과업지시서)에 평일 및 토·일요일(공휴일, 휴업일 포함)별로 당직기사의 과업(임무)을 시간대별로 세부적으로 부여하고 최소 근무시간(근로인정시간) 규정 등

② 인건비 구성 비중 확대

- 학교 당직기사의 급여수준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의 비중을 총용역금액 대비 80%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마련
 - 2014년도에는 인건비(직접+간접)의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하고, 2015년부터는 직접인건비의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개선
 - ※ 지역적 특성, 업체규모, 계약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예시 >

- 사업발주 시 계약조건, 용역계약서, 산출내역서 등에 인건비의 비중이 80%이상 이 되어야한다는 규정 명시

- (권익위의 권고이행의 책임주체가 교육부와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권고 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선 학교현장에 떠넘기고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단순 안내하고 있을 뿐임
- 일선 학교에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예산지원 대책 수립 전혀 없음
- 현재 교육청은 이행권고를 위반하고 있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행정당국은 명절기간 연속근무의 원인으로 “당직기사 스스로 연속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으로만 파악한 채 아무런 개선대책 수립하지 않고 있음
- ☞ 당직기사들이 명절기간 근무를 하는 이유는 명절연휴기간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쉬게 되면 오히려 임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당직기사들이 “무급으로 쉬느니 차라리 힘들더라도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 따라서 추석/설날 명절기간 비인간적 장기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절휴일기간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휴일 대체 또는 교대제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대책”이 필수임

○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로 인건비 책정해야 하는 공공부문비정규직 보호지침 위반되는 학교현장

-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시중노임단가 시급 8,209원
- 여전히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지급
- 학교회계년도 3월부터라는 이유로 매년 1, 2월 반복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6) 교무 / 과학 / 전산 / 행정 실무사 직종통합

- 각 지역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고유 업무 보장 없는 직종통합 진행
 - 직종통합 대상은 주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직종
 - 위의 직종들을 통합시켜 각 직종의 고유 업무는 없애고 비정규직에게 많은 업무를 전가시켜 학교내 온갖 잡무를 도맡아 하는 역할 부여
 - 오전은 과학실 또는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오후는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압축적인 노동으로 업무량 배로 증가함
 - 당사자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근무 장소가 바뀌거나 배치 기준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비민주적 인사관리 남발됨
 - 노동환경 및 처우에 대한 개선 없이 직종통합 진행
 - 퇴사 및 일방적인 정원기준으로 고유업무의 정원이 충원되지 않아, 늘어난 업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 무분별한 직종 통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의 피해 야기
 - 채용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채용했음에도 그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음
 - 과학 직종의 경우 직종통합으로 근무지가 교무실로 배치되면서 과학실험 횟수가 크게 줄어, 학생들의 교육권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 교원업무 경감 정책으로 학교비정규직의 폭발적인 업무 과다 발생
 - 교원업무의 경감이 필요하다면 그 업무를 담당할 신규 인력을 배치해야 함에도 기존에 있는 학교비정규직에게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함
 - 본래 직종의 업무에 교원업무까지 더해지면서 직종통합이 되어 업무량은 두 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남
 - 학교비정규직의 업무를 보조역할로 규정짓는 학교 내에서 학교비정규직이 대등한 조건에서 업무분장 협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직종통합과 강제전보의 결합, 정원관리와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

- 배치기준 개악, 직종통합, 강제전보가 본격화된 2014년 이후 인력신규채용 수요가 많은 소위 교원업무경감 관련 직종들 인력감축 결과

<표 30> 교원업무경감 관련 직종 연도별 인원수 <2014-2016>

직종명	2014년	2015년	2016년	2년간 증감
교무	21,873	20,319	19,478	-2,395
과학	4,325	4,165	4,253	-72
전산	1,626	1,537	1,506	-120
사무 (행정)	9,194	8,923	8,882	-312
합계	37,018	34,944	34,119	-2,899

○ 교육부가 앞장서서 직종통합방식의 일방적 인력구조조정 강제하고 있음

<2016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2015년 10월, 교육부)

3 기타사항

- (직종통합) 적극적인 교무행정정보조인력 직종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 산식 변경 추진('17~)
 - ※ (현행) 교무·과학·전산보조 별도 산정 → (변경) 교무행정 단일기준 통합
 -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15.10.16)
- (인원감축) 학교회계직원의 엄격한 사용·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초과 교육청 패널티 강화('18~)
 - ※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반영 → (강화) 초과 사용인원의 일정비율 다음연도 기준재정수요에 감하여 반영
- (시행시기) 시·도교육청이 직종통합 및 인원감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17~18년도부터 적용(1~2년 추진기한 부여)

○ 준비없는 일방적인 묻지마식 강제전보 시행의 문제점

- 교육감직접고용제도에 맞게 기존 학교별 퇴직금, 사회보험 관리제도에서 교육감 단위의 관리제도가 우선 시행되어야 함(현재 상황에서는 학교를 옮기는 전보가 실시될 경우 퇴직금과 사회보험상에서 퇴사후 재입사라는 신분상의 불이익 발생)
-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유업무 보장되어야 함
-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노동조합 또는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함

7) 위협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 몇 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온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소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교육부는 매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 급식노동자들이 아파도 쉬지 못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데, 병·휴가 사용보장을 위한 대체인력확보 대책수립 필요함

○ 급식노동자의 9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고, 단시간에 많은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해야하는 전쟁터와 같은 급식실 노동환경으로 인해 화상, 절단 등 베임사고, 넘어지거나 추락 등의 사고도 빈번히 발생함. 이와 같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서울지역 학교에서 급식노동자가 화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함
- 올해도 강원 춘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 발생함
- 2015년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한해동안 교육기관 노동자 1,366명이 산업재해, 넘어지거나(26%), 화상(13%)을 입는 등 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최근에는 급식실 내 유해가스과 청소/소독물질의 독성 등으로 인한 직업성 암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음(최근 급식노동자들의 암발생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 3년간 광주 초등학교 급식실 암으로 인하여 3명이 사망)

<표 31> 교육기관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2015년 안전보건공단)

구분	합계	넘어짐	이상도 / 물체 접촉	체육 등의 사고	부딪힘	절단 / 찢림	끼임	떨어짐	업무상 질병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폭력 행위	기타
재해자 (명)	1,366	357	178	150	101	97	82	77	97	55	20	152
점유율 (%)	100	26	13	11	7	7	6	6	7	4	1	11

- 급식노동자들은 마치 곡예사와 같이 급식실내 후드 및 천장 청소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낙상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사진> 급식노동자들이 마치 곡예사처럼 위험한 자세로 후드청소를 하는 모습



- 급식실 조리기구 후드, 환풍기, 천장 등 청소 등은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에 의뢰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대다수 학교현장에서는 조리종사원이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낙상하는 사고 발생

<대전교육청 학교급식기본방향>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이행, 학교급식소 ‘위험성 평가’ 및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유해요인 개선
- ※ 평생교육체육과-10979(2014. 12. 9), 평생교육체육과-264(2015. 1. 8) 공문에 의거 학교급식소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15년 5월말까지 보고
-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천장 및 닥트 청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인력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청소 실시
(’14년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권고사항)

-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조리종사원 병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인력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지역도 없어 실제로 조리종사원의 병·휴가 사용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2~3식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하루 평균 12시간(주60시간) 급식을 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업무경감대책이 전무하고, 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허용시간을 초과한다며 초과근로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함.
- 1인당 터무니없이 많은 식수인원, 인건비 절약을 위한 열악한 배치기준이 골병과 산재사고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임.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시급함
 - 노동환경이 열악한 2·3식 학교일수록 급식사고 발생을 월등히 높아
 - 급식실 환경이 열악할수록 급식의 안전도 위협받는다는 점이 확인됨
 - 교육부도 급식실 인력문제가 안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

-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은 필수

<표 32> 시도별 급식종사자 1명당 급식인원

지역	초	중	고	평균
강원	142	119	158	140
경기	171	150	144	155
경남	147	147	147	147
경북	130	130	130	130
광주	172	172	172	172
대구	140	120	120	127
대전	223	223	199	215
부산	213	222	192	209
서울	220	187	187	198
울산	164	140	140	148
인천	200	170	170	180
전남	147	147	147	147
전북	158	128	128	138
제주	135	120	120	125
충남	146	125	110	127
충북	182	182	182	182
평균	167	155	153	158

- 급식실 노동자들 외에도 과학실의 경우 물질성분표시조차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있고, 특수교육실무사의 경우도 교육지원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행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산재를 신청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교비정규직에 공통적으로 질병휴가/휴직제도 개선 및 대체인력제도 도입이 필요함.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공제제도를 비정규직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Part

7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법 제정

7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법 제정

1) 교육부의 고용안정 대책으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될 수 없다

- 교육부 고용안정대책(1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및 신규 채용시 무기계약 채용)조차 지켜지지 않는 교육현장
 - ☞ 교육부의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함
-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제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함
-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한 주 15시간 초단시간 근무제도 폐지해야 함
- 10개월, 11개월 계약폐지하고, 신규 채용시부터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야 함
- 현원에 대한 고용보장 원칙하에 고용안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신규 사업 또는 사업 확대시 고용영향 평가 의무화해야 함

2) 교육부의 처우개선 대책으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될 수 없다.

- 현행 장기근무가산금 2만원으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결될 수 없음
 - 일을 하면 할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속이 반영되는 호봉제가 도입되어야 함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있는 각종 상여금 차별, 급식비 차별 등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
- 현재 실무사기준 시급은 6,366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겨우 336원 높음
 - 학교회계년도가 3월부터라는 이유로 17년 1월부터 기본급 인상하지 않을 경우 ⇒ 2017년 1월부터 최저임금 위반문제발생
 - *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 6,470원

3)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 및 특별예산 편성

-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되어야 한다.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열악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함
 -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직업에 귀천이 없고, 인간은 평등하다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 가장 극심한 비정규직 차별이 존재함)
 - 근본적인 차별 해소 및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비정규직 차별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따로, 예산 따로 ?
 - 상여금 및 복리 후생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정부 정책, 예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예산 대책 없는 정부 정책은 빈 껍데기에 불과함
 - 정부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함

-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는 조건에서 누리과정 예산처럼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함

4) 법률 제정으로 근본적 대책 수립해야 한다.

- 학교비정규직의 채용 및 관리 조례가 17개 시도에서 제정되었지만, 교육감 채용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 차원에서 정원 관리만 있을 뿐,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에 대한 조항은 없음
- 종합적 법률이 없다보니 시도교육청별로 주먹구구 인력관리
 - 본 정책자료집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학교비 정규직의 고용문제도 처우문제도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일 수밖에 없음

- ✓ 같은 일을 하는 직종이라 하더라도 전국 시도마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다름
- ✓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등으로 고용 불안 겪음
- ✓ 정규직과의 차별 심각(정규직 반토막 임금 수준)
- ✓ 학교비정규직의 규모 계속 증가, 시간제고용과 간접고용 확대
- ✓ 정체불명의 명칭 사용 : 학교회계직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제근로자,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교육실무직원, 00보조 등 직무와 역할이 반영되지 않음

-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제정이 시급함
 -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만으로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와 고용불안 문제는 개선될 수 없고, 공교육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
 - 학교비정규직을 학교 교육현장의 주체인 교직원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적 역할과 공공적 역할을 존중하는 ‘교육공무직’ 명칭 사용 필요함
 -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관리를 위해 법률 필요
 -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교육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함

- 정부(교육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범답안인 교육공무직법 제정해야 함
 - 무기계약직은 상대적인 고용안정이 있을 뿐, 기간제와 동일한 임금 등 처우를 받고 있고, 고용불안도 상당한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함
 - ‘교육적’·‘공공적’ 역할이 반영된 ‘교육공무직’이라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모델추진
 -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정이 필수적임
- 교육공무직법 제정으로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되어야 함
-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용관계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및 경력인정 호봉제 도입, 동일노동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된 임금 및 근로조건을 마련해야 함
-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통해 임금차별 해소 조항 담고 있음

〈기획재정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보수는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유사·동종 정규직과의 임금비교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직종별로 따로 정한다.

② 근로자의 보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 증가율, 표준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참고자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¹⁾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중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객관적으로 일시적 업무가 아니고 학기 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1) 본 법률안은 20대 국회에 발의 예정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유은혜의원실에서 검토 중인 초안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처우 및 지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① 국립학교, 교육부와 그 소속기
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
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
학교경영자가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각각 노동관계법의 사용자로 본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교육공무직원이 복
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2년 이내로 기간을 정한 한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3. 정년을 초과한 교육공무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제2호의 사업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로자로 본다.

- ④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 전보, 교류 및 경력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과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국립학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

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② 교육공무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정년) ①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③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말일에, 9월부터 그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그 2월말일에 각 퇴직한다. 단, 회계기간을 달리 정하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말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말일에 각 퇴직한다.

제9조(복무기준 등 취업규칙의 작성)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보수 등)

- ①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이에 따

른다.

- ②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직무연수)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 이전의 근로기간은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본다.

1.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할 것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3.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때 그 이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과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교육공무직원의 배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현 교원 또는 공무원의 정원 및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⑥ 사용자는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으로의 채용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

2016. 2



교 육 부
(학교회계직원지원팀)

I

추진배경 및 목적

- 새정부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시행(13.4.)
 - 공공기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
- * (노동부 주재) 국조실·기재부·교육부·노동부·안행부 등
- 정부의 대책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7. 30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 발표(13.7.)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기준 완화(2년→1년), 장기근무가산금 단계적 확대(매년 2만원 / 상한액 '13년 13만원 → '18년 39만원) 등
- '15년 4·7월 국회 임시회(교문위)에서 학교회계직원의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요구
 - 국회 '16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학교회계직원 명절상여금,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인상 채택('15.12.)

(국회 부대의견) 학교회계직원의 명절상여금을 현행 40만원에서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학교회계직원 영양사에 대한 면허가산수당을 현행 월2만원에서 2016년부터 월83,500원으로 인상

- 관계부처 합동으로 2단계('16~'17) 정규직 전환 계획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16.2.)
 - 상시·지속 업무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 포함)의 일정 목표 비율 내에서 사용·제한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큰 방향에 맞추어, 국회 '16년 예산 부대의견 등을 반영한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 마련 필요

II

추진 경과

- **20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11.2.)**
 - 연봉기준액 4% 인상, 명절휴가보전금(연20만원), 장기근무가산금(월3~8만원), 맞춤형복지비(연 20~35만원) 신설

- **2012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11.11.)**
 - 교통보조비(월6만원), 자녀학비보조(연178만원), 가족수당(월8만원), 보육수당(월3만원), 기술정보 및 특수업무수당(월2만원) 등 6개 수당 신설
 - 연봉기준액 3.5% 인상 및 장기근무가산금 인상(월5~13만원)
 - 학교 수, 학생 수 감축 등으로 인한 해고사유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취업을 지원하는 인력풀(POOL) 운영제 도입

- **2013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13.2.)**
 -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연봉기준액 2.8% 인상

-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14.1.)**
 - 1년 이상 상시 지속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 장기근무가산금의 단계적 확대(2년마다 1만원 / 상한액 13만원→1년마다 2만원/'18년까지 39만원)
 - 기본급 1.7% 인상(공무원 급여인상률 수준)

- **2015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15.2.)**
 - 기본급 3.8% 인상(공무원 급여인상률 수준), 장기근무가산금 증액(상한액 '15년 25만원)

Ⅲ

고용·처우 실태 및 개선방안

1

고용안정 부문

고용안정 실태

- '13년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적극 추진
- 특히, 기간제법 상 2년인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1년으로 단축한 결과, 학교회계직원의 무기계약 전환율 큰 폭으로 상승

※ 연도별 전환률(%) : ('13) 71.2 → ('14) 96.2 → ('15) 97.4 (전환대상자 기준)

고용안정 개선방안

- 1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속 추진 및 상시·지속 업무 결원 발생 시 무기계약 채용 유도
 - 일선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가 없도록 사전 교육 및 지원
- ※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고용노동부 시행, '13.10.) 준용,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 전환 및 해당 업무 결원 발생 시 정규직 채용
-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설업무의 경우, 무기계약 채용 노력
- 학생 수 감소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 학교 간 전보 및 직종 전환배치 등 해고 회피노력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력풀제 운용 등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2 처우개선 부문

처우개선 실태

- 최근 5년간 우리부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에 따라 학교회계직원 처우 수준은 상당 부분 개선* 되었으나
 - 급식비, 명절휴가보전금 등 기본적 복리후생 금품에서는 미흡한 수준
- * (10년차 기준) 최근 5년 간 영양사 등 상시전일 근무자 임금은 28% 정도 상승
- 학교회계직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사용자(교육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으로 정하므로 시·도별로 일부 상이*
 - * 시·도교육청별 현황 : (급식비) 월 4만~10만; (명절휴가보전금) 연 40만~50만

처우개선 개선방안

- 기본급 인상 및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인상
 - (기본급) '16년 기본급을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맞추어 3.0% 인상
- ※ 영양사·사서 직종 및 그 외 직종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제시한 '16년 학교회계직원 보수표(붙임2) 적용

《'16년도 학교회계직원 기본급 인상(안)》

구 분	2015(A)	2016(B)	증감(B-A)	비 고
영양사·사서직종	1,676,920원	1,727,220원	50,300원	3.0%
그 외 직종	1,501,900원	1,546,950원	45,050원	

- (장기근무가산금) '14년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16년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을 월 25만원에서 31만원으로 확대(붙임3)

□ 기본적 복리후생 금품 등 각종 수당 처우개선(국회 '16 예산 부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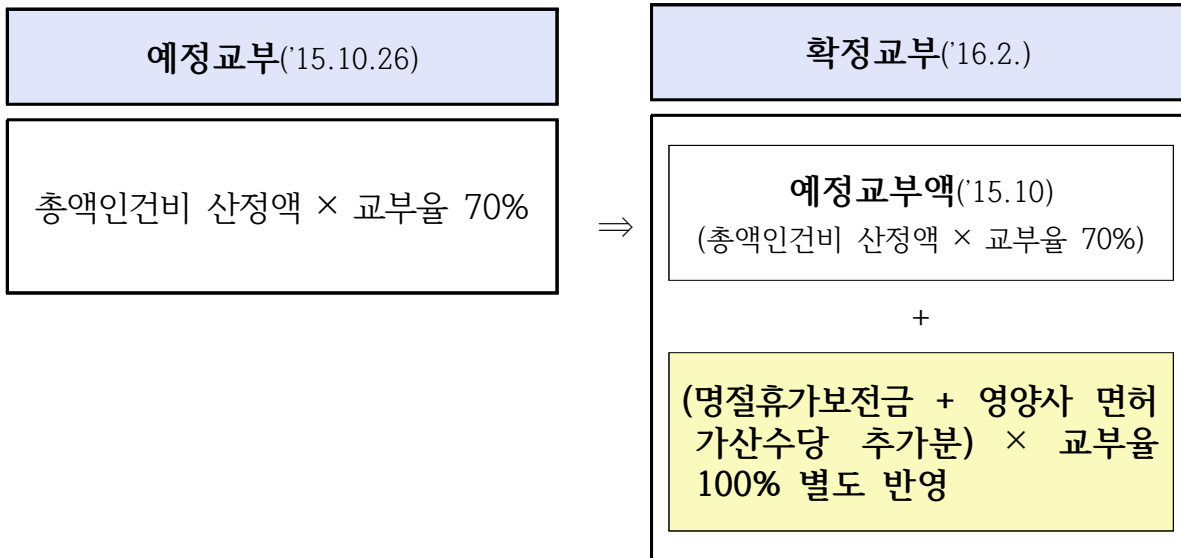
○ (명절휴가보전금) 현행 시·도 평균 연 40만원을 '17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하되 우선 '16년에는 연 70만원으로 인상 지급

※ 국회 '16년 예산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16년 2월부터 명절휴가보전금 지급

○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기존 기술정보수당(월2만원, 자격수당)을 면허가산수당(월 83,500원, 직책급 교당 1명)으로 변경 인상

※ 영양사가 2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영양사 1명을 지정하여 직책급인 면허가산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영양사에게는 기존 기술정보수당 지급 유지

◇ 국회 '16년 예산 부대의견에 따른, 학교회계직원 명절휴가보전금 및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추가 소요분 보통교부금(총액인건비) 추가 반영



※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명절휴가보전금 및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추가 소요분은 총액인건비 교부율 70%를 적용하지 않고 100%를 별도 반영

3 인력관리 부문

인력관리 실태

- 학교회계직원 지속적 증가 추세* 및 인력운용 유연성 미흡
 - 총액인건비 통제 등을 통해 학교회계직원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나, 돌봄전담사 등 국정과제 및 복지업무 수요 확대 등으로 애로
 - * 인원변동 추이(명) : ('11)130,456 → ('13)140,989 → ('14)142,152 → ('15)141,965
 - ** '15년 인원 증가 직종 순 : 돌봄 3,478명 증가('14년 8,890 → '15년 12,068); 특수교육 906명 증가('14년 7,875 → '15년 8,781)
 - 학생 수 등 교육행정 수요변화에 따른 인력운용의 유연성 미흡
 - 학교회계직원 직종 단순화('14년 25개 직종 → '15년 16개 직종)를 지속추진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은 직종별로 세분화되어 담당 업무 고착

인력관리 개선방안

-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초과 교육청 페널티* 부여 등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정원(무기계약직) 관리체계 강화('18~)
 - 시·도교육청 조직분석 결과에 따라, 우수교육청에 대해 총액인건비 페널티 부과 규모만큼 차등적 재정지원 검토
 - * 초과 사용인원의 일정비율을 다음연도 기준재정수요에 감하여 반영
- 정부 합동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6.2.)에 따라 학교회계직원 목표관리제 도입 추진

-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범 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시·도교육청별 목표관리체계 마련

※ 교육기관은 기관별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관리(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 8%)

- 학생 수 감소 등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 교회계직원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대

- 유사 직종별 단순화 및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학교회계직원의 학 교 간 재배치 등 유도

※ 시·도교육청 조직분석 진단평가 지표, '전보·재배치 실적' 항목 신설 등

IV

행정사항

- 시·도교육청, 일선학교 당직기사 위탁계약 체결 시 국가권익위원회 권 고사항 이행 노력

- 학교 당직기사 휴게시간 보장, '16년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 도 강화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목표관리제 도입을 위한 교육청별 자체 세 부계획 수립

※ 고용노동부 등 세부계획 시행 시 별도 계획 통보 예정

붙임 1
2015년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전환 현황

(단위: 명, 2015.4.1 기준)

시도별	합계 (A=B+C+D+E)	무기 계약직(B)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C)	1년미만 (D)	전환 제외 (E)	전환율 (F=B/A-D-E)
서울	22,671	14,224	1,170	2,985	4,292	92.4%
부산	7,937	6,157	85	470	1,225	98.6%
대구	6,865	5,561	119	596	589	97.9%
인천	8,355	5,863	84	416	1,992	98.6%
광주	4,392	3,760	118	191	323	97.0%
대전	4,022	3,755	13	19	235	99.7%
울산	3,488	3,101	32	68	287	99.0%
세종	685	624	0	7	54	100.0%
경기	34,453	28,582	339	1,982	3,550	98.8%
강원	6,480	5,809	14	87	570	99.8%
충북	4,962	4,634	14	54	260	99.7%
충남	5,443	4,727	46	198	472	99.0%
전북	5,896	4,521	69	342	964	98.5%
전남	6,836	5,068	513	400	855	90.8%
경북	7,918	6,238	167	465	1,048	97.4%
경남	9,312	7,777	235	652	648	97.1%
제주	1,727	1,484	5	17	221	99.7%
국립	523	424	8	25	66	98.1%
합계	141,965	112,309	3,031	8,974	17,651	97.4%

붙임 2

2016년도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안)

구 분	① 영양사·사서 직종(단위:원)					② 그 외 직종(단위:원)			
	기본급	장기근무 가산급	교 통 보조비	기술장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월급	기본급	장기근무 가산급	교 통 보조비	월급
1년이상	1,727,220	0	60,000	20,000	1,807,220	1,546,950	0	60,000	1,606,950
2년이상	1,727,220	0	60,000	20,000	1,807,220	1,546,950	0	60,000	1,606,950
3년이상	1,727,220	50,000	60,000	20,000	1,857,220	1,546,950	50,000	60,000	1,656,950
4년이상	1,727,220	70,000	60,000	20,000	1,877,220	1,546,950	70,000	60,000	1,676,950
5년이상	1,727,220	90,000	60,000	20,000	1,897,220	1,546,950	90,000	60,000	1,696,950
6년이상	1,727,220	110,000	60,000	20,000	1,917,220	1,546,950	110,000	60,000	1,716,950
7년이상	1,727,220	130,000	60,000	20,000	1,937,220	1,546,950	130,000	60,000	1,736,950
8년이상	1,727,220	150,000	60,000	20,000	1,957,220	1,546,950	150,000	60,000	1,756,950
9년이상	1,727,220	170,000	60,000	20,000	1,977,220	1,546,950	170,000	60,000	1,776,950
10년이상	1,727,220	190,000	60,000	20,000	1,997,220	1,546,950	190,000	60,000	1,796,950
11년이상	1,727,220	210,000	60,000	20,000	2,017,220	1,546,950	210,000	60,000	1,816,950
12년이상	1,727,220	230,000	60,000	20,000	2,037,220	1,546,950	230,000	60,000	1,836,950
13년이상	1,727,220	250,000	60,000	20,000	2,057,220	1,546,950	250,000	60,000	1,856,950
14년이상	1,727,220	270,000	60,000	20,000	2,077,220	1,546,950	270,000	60,000	1,876,950
15년이상	1,727,220	290,000	60,000	20,000	2,097,220	1,546,950	290,000	60,000	1,896,950
16년이상	1,727,220	310,000	60,000	20,000	2,117,220	1,546,950	310,000	60,000	1,916,950
17년이상	1,727,220	310,000	60,000	20,000	2,117,220	1,546,950	310,000	60,000	1,916,950
18년이상	1,727,220	310,000	60,000	20,000	2,117,220	1,546,950	310,000	60,000	1,916,950
19년이상	1,727,220	310,000	60,000	20,000	2,117,220	1,546,950	310,000	60,000	1,916,950
20년이상	1,727,220	310,000	60,000	20,000	2,117,220	1,546,950	310,000	60,000	1,916,950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면허가산수당(영양사), 맞춤형복지비 별도 지급

붙임 3
근속년수별 장기근무가산금

(단위 : 원)

근속년수	2014	2015	2016	2017	2018
3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5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6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7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8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9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1	19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2	190,0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13	19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4	190,000	250,000	270,000	270,000	270,000
15	190,000	250,000	290,000	290,000	290,000
16	190,000	250,000	310,000	310,000	310,000
17	190,000	250,000	310,000	330,000	330,000
18	190,000	250,000	310,000	350,000	350,000
19	190,000	250,000	310,000	350,000	370,000
20	190,000	250,000	310,000	350,000	390,000

2016. 국립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2016. 2



교 육 부

(학교회계직원지원팀)

I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 국정과제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 추진 경과

- '초·중등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제정·시행(교육부 훈령, '04년)
 - 연봉제 도입, 근무 유형, 기타 근로조건 등의 기준 설정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마련·시행('11년 ~ '14년)
 - 명절휴가보전금, 장기근무가산금 및 6개 수당 신설
 -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 시행
-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14.3.)
- '2015년 국립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시행('15.4.)
 - 기본급(3.8%) 및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인상(25만원→31만원)

□ 추진 근거

-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

* 제32조(보수)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함

□ 적용 범위

- (대상) 유·초·중등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 (기간) '16. 3월부터 적용

기본 방향

- ◆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큰 방향에 맞추어,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전환 및 처우개선 추진
- ◆ 국립학교 간의 차이가 있는 기존 학교회계직원 보수를 '보수표'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일하되, 기존 임금수준의 저하가 없도록 추진

1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 1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평가절차를 거친 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 강화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및 시점 등은 기존의 '국립학교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평가 기준(참고 [붙임 1])'을 준수
 - ※ 관련 규정 :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무기계약직 전환), 제6조(채용), 제1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등
- 상시·지속적 업무 결원 발생 시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에는 다시 비정규직으로 사용 원칙적으로 금지
 - 기존 인원 이외의 신규 채용은 억제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

2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 '16년도 처우개선 인상분 등 적용

- (기본급) '16년 기본급은 공무원 급여인상률에 맞추어 3.0% 인상
 - 영양사·사서 및 그 외 직종의 '2016년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참고 [붙임 2])' 준수(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 매월 지급)

구 분	2015(A)	2016(B)	증감(B-A)	비 고
영양사·사서직종	1,676,920원	1,727,220원	50,300원	3.0%
그 외 직종	1,501,900원	1,546,950원	45,050원	

- (장기근무가산금) '16년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의 상한액을 월 25만원에서 월 31만원('16년)으로 확대(참고 [붙임 3])
- (급식비) 월 8만원 지급
- (기타수당) 명절휴가보전금, 영양사 기술정보수당은 현행 유지하되,
 - 국회 '16년 예산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명절휴가보전금 및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인상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별도 통보 예정
 - * 학교회계직원의 명절상여금을 현행 40만원에서 '16년부터 2년에 걸쳐 100만원으로 상향지급하고 학교회계직원 영양사에 대한 면허가산수당(현 기술정보수당)을 현행 월2만원에서 '16년 월83,500원으로 인상

□ 통일적인 단일 보수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

- 임금 총액의 저하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 수당항목 및 수준 등을 '보수표'에 맞추어 학교 자체적으로 점진적 조정 노력
 - ※ '보수표(참고 [붙임 2])'에서 제시된 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함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한 달의 기본급, 교통보조비, 급식비, 위험근무수당 및 자격가산금은 일할비례로 지급

-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기술정보(특수업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은 전액 지급
- 시간제 근무자(주 15시간 이상 ~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
- 급식비는 전액 지급하되, 주 5일 근무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비례로 지급

Ⅲ

행정 사항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및 절차 준수 철저

-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불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기준, 절차 및 인사위원회 구성 준수
- ※ 국립학교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평가 기준(붙임 1) 참고

보수체제 전환 후 복무관리 유의사항

- 학교회계직원의 보수체제 전환 후(연봉제 → 월급제) 재량휴업일은 근무일이 원칙임
- 연차사용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쉬게 하고 임금을 미지급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또한, 기존 유급휴일로 적용 학교는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대로 유지

붙임 1

국립학교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평가 기준 및 절차

□ 관련 근거

-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위원장(교감) 및 위원(5~7명, 전체 위원 중 외부위원 수는 반드시 내부위원 수와 동수 이상)
- (운영) 원칙적으로 비공개,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보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동 규정 제16조 제4항은 삭제, 2015.3.4. 시행)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으로서 상시·지속되는 동종·유사업무에서 계약종료 시점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상시·지속되는 업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연중 계속되는 업무”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식종사자 등과 같이 방학으로 일시적 근무가 정지*되는 경우도 의미
 - * 방학이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보며 미포함 된 경우에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보지 않음
 -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평가시점에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노력
 - “과거 2년 이상 지속”이란, 분석 기준일 이전에 업무*가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경우를 의미. 다만,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설

업무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가능(정부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16.2.)

- * 근로자가 2년 이상 반드시 동일 직종에 근로해야 하는 것이 아님
- ** 상시·지속 업무의 판단기준 중 업무 지속 기준이 1년으로 단축된 것이 아님
- “향후에도 지속” 된다는 것은 직종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사·동일한 업무가 반복되는 경우를 의미
 - ※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응투자에 따른 인력 채용사업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별도 판단 후 결정

□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 시점) 원칙적으로 매년 2월말을 의미하며,
 - 학교별 여건에 따라 고용안정 취지를 고려, 매년 3월 1일 이전 전 년도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도 포함하여 적용 가능
 - ※ 학교장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이후 해당 직종의 채용공고 여부 결정
- (무기계약직 근무 시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무기계약 전환 결정을 통해 매년 3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 근무

□ 전환제외 대상

-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
-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감소시점까지 기간제로 운영 가능
 - 다만, 감소 시점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사용

□ 평가절차 및 탈락기준 등

- (평가절차)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계약 전환평가 기준에 따라 전환평가 실시
 - ① 평가대상자 선정 → ② 인사위원회* 전환평가 및 심의·의결 → ③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결정
- (평가 탈락기준) 인사위원회 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5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자격증 가점)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를 판단하되, 평균점수에 “1점” 가점을 부여
 - 복수 이상 업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도 1개 자격증만 인정하며 가점 인정점수도 최대 1점임

붙임 2

2016년 국립 학교회계직원 보수표

- 대상 : 유·초·중등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 적용제외 :
 - 학부모회직(구 육성회직) 중 호봉제를 적용받는 자
 - 교원대체 직종(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기타 강사 등)
 - 별도 사업계획 및 지침 등에 의하여 보수를 적용받는 근로자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방식 (방중비근무)	
기본급	기본급	월	1,727,220원	영양사·사서	주40시간 1개월 만근	
			1,546,950원	그 외 직종		
수당	공통	교통 보조비	월 6만원	학교회계직원	일 할비례	
		장기근무 가산금	월 5~31만원	학교회계직원 (전임경력 및 계속 근로기간 합산 3년 이상이며 계약기간 1년 이상)	일 할무관	
	직종별	기술정보 수당	월 2만원	영양사면허 소지 영양사 1인	일 할비례	
		특수업무 수당	월 2만원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	일 할무관	
		위험근무 수당	월 5만원	조리사, 조리원	일 할비례	
		자격 가산금	월 기본급의 5%	조리사 자격증 소지 조리사 1인 전산(워드프로세스 관련 자격증 제외) 자격증 소지 전산 1인	일 할비례	
	대상별	가족 수당	월 공무원 지급기준	학교회계직원	일 할무관	
		자녀학비 보조수당	분기 공무원 지급기준	학교회계직원	일 할무관	
	기타	복리비	명절휴가 보전금	연 40만원 (각1회×20만원)	명절 현재 재직자	일 할무관
			급식비	월 8만원	학교회계직원	일 할비례
맞춤형 복지비			연 현행유지 (20~40만원)	학교회계직원	일 할비례	

- 1) 상기 보수표를 적용받는 학교회계직원은 '16.3.1.부터 상기 보수표 이외에 학교자체 지침 등에 따른 수당 신설(인상 포함)은 불허함
- 2) 시간제 근로자(주 15시간 ~ 40시간 미만)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 다만, 급식비는 전액지급(주 5일 근무가 아닐 경우 일할비례)

붙임 3

근속년수별 장기근무가산금

근속년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	5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5	6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6	6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7	7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8	7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9	8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0	80,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1	90,000	19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2	90,000	190,0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13	100,000	19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4	100,000	190,000	250,000	270,000	270,000	270,000
15	110,000	190,000	250,000	290,000	290,000	290,000
16	110,000	190,000	250,000	310,000	310,000	310,000
17	120,000	190,000	250,000	310,000	330,000	330,000
18	120,000	190,000	250,000	310,000	350,000	350,000
19	130,000	190,000	250,000	310,000	350,000	370,000
20	130,000	190,000	250,000	310,000	350,000	390,000

(단위 : 원)

2015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안)

2015. 2.

교 육 부

(학교회계직원지원팀)

I. 개 요

□ 추진 배경

- 대통령 취임식 행사시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 복주머니를 개봉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국민에게 약속('13.2.25)
-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 * 국정과제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 당·정 협의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안)」 발표('13.7.30)

□ 추진 경과

- '초·중등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제정·시행(교육부훈령, '04년)
 - 연봉제 계약방법, 처우, 연봉기준일수에 따른 학교회계직원 근무 유형, 기타 근로조건 등의 기준 설정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마련·시행('11년 ~ '13년)
 - 명절휴가보전금, 장기근무가산금, 6개 수당 신설
-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 수립·시행('14.1.)
 -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장기근무가산금의 단계적 증액*, 직무·성격 등에 따른 근로·보수체계 단순화 등 시행
 -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14년 19만원→'15년 25만원→'18년 39만원)

□ 적용 범위

- 시·도교육청(소속 기관) 및 공(사)립 유·초·중등 학교
 - ※국립학교 제외(추후 별도 시행 예정)

Ⅱ.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내용

□ [고용안정] 무기계약 전환 지속 추진

- 1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종사자에 대해 평가절차를 거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 강화
 -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13.10.22)을 참고하여 시·도 교육청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 【붙임1】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 상시·지속적 업무 결원 발생시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에는 다시 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 제외자) 사용 금지
 - *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13.9. 기재부)
- 사업 종료, 학생 수 감소 등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교육청 차원 인력풀 등재 등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으로 고용불안 최소화

□ [처우개선] 기본급 인상 및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확대

- '15년도 학교회계직원의 기본급을 공무원 급여 인상률 수준에 맞추어 3.8% 인상

구 분	2014(A)	2015(B)	증감(B-A)	비 고
영양사·사서직종	1,615,530원	1,676,920원	61,390원	3.8%
그 외 직종	1,446,920원	1,501,900원	54,980원	

- 영양사·사서 직종 및 그 외 직종의 '15년도 학교회계직원 보수표 제공(기본급 및 각종 수당 합산한 금액 매월 지급)
 - ※ 【붙임2】 '15년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안) 참조
- '14년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의 상한액을 월19만원→25만원('15년)으로 확대
 - ※ 【붙임3】 근속년수별 장기근무가산금 참조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한 달의 기본급 및 교통보조비·위험수당·조리사수당은 일할계산하고, 그 외 수당은 전액 지급

Ⅲ. 행정 사항

□ NEIS 인사·급여 관리시스템 구축·개발 추진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시스템 구축·개발 T/F팀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별 인사 및 급여 업무 표준화 작업 추진
- 시·도교육청별 인사업무표준안 조례 등 관련 규정 반영 협조

□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산정방식 개선 추진

- 유사 직종 통일 및 기준(표준) 인원 산식 개선 관련 의견 수렴
- 시·도별 편차 조정, 산식 적용 방식 및 변수 등 검토

□ 국가권익위원회 권고 및 개선방안 등 협조

- 설 명절 기간 중 학교당직기사의 휴게시간 보장
- 학교당직기사 위탁 용역 계약 체결시 권고 내용 준수 지도

□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담당자 공동관리협의회 적극 참여

- 학교회계직원 업무담당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공유
- 학교회계직원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등

- 【붙임】 1.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전환 현황
2. '15년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안)
3. 근속년수별 장기근무가산금

붙임 1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전환 현황

(단위: 명, 2014.4.1 기준)

시도별	합계 (A=B+C+D+E)	무기 계약직(B)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C)	1년미만 (D)	전환 제외 (E)	전환율 (F=B/A-D-E)
서울	22,687	13,409	1,653	3,381	4,244	89.0%
부산	8,262	5,904	291	546	1,521	95.3%
대구	6,751	5,401	320	498	532	94.4%
인천	8,362	5,057	300	789	2,216	94.4%
광주	4,243	3,447	154	169	473	95.7%
대전	4,118	3,545	73	177	323	98.0%
울산	3,746	3,124	72	94	456	97.7%
세종	429	232	26	93	78	89.9%
경기	34,613	28,322	368	1,945	3,978	98.7%
강원	6,379	5,648	64	106	561	98.9%
충북	5,103	4,515	43	96	449	99.1%
충남	5,421	4,405	104	102	810	97.7%
전북	6,174	4,353	212	334	1,275	95.4%
전남	6,208	5,016	66	504	622	98.7%
경북	7,965	6,090	254	632	989	96.0%
경남	9,404	7,450	261	696	997	96.6%
제주	1,779	1,497	1	5	276	99.9%
국립	508	368	19	64	57	95.1%
합계	142,152	107,783	4,281	10,231	19,857	96.2%

붙임 2

'15년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안)

구 분	① 영양사 · 사서 직종(단위:원)					② 그 외 직종(단위:원)			
	기본급	장기근무 가산급	교 통 보조비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월급	기본급	장기근 무가산 급	교 통 보조비	월급
1년이상	1,676,920	0	60,000	20,000	1,756,920	1,501,900	0	60,000	1,561,900
2년이상	1,676,920	0	60,000	20,000	1,756,920	1,501,900	0	60,000	1,561,900
3년이상	1,676,920	50,000	60,000	20,000	1,806,920	1,501,900	50,000	60,000	1,611,900
4년이상	1,676,920	70,000	60,000	20,000	1,826,920	1,501,900	70,000	60,000	1,631,900
5년이상	1,676,920	90,000	60,000	20,000	1,846,920	1,501,900	90,000	60,000	1,651,900
6년이상	1,676,920	110,000	60,000	20,000	1,866,920	1,501,900	110,000	60,000	1,671,900
7년이상	1,676,920	130,000	60,000	20,000	1,886,920	1,501,900	130,000	60,000	1,691,900
8년이상	1,676,920	150,000	60,000	20,000	1,906,920	1,501,900	150,000	60,000	1,711,900
9년이상	1,676,920	170,000	60,000	20,000	1,926,920	1,501,900	170,000	60,000	1,731,900
10년이상	1,676,920	190,000	60,000	20,000	1,946,920	1,501,900	190,000	60,000	1,751,900
11년이상	1,676,920	210,000	60,000	20,000	1,966,920	1,501,900	210,000	60,000	1,771,900
12년이상	1,676,920	230,000	60,000	20,000	1,986,920	1,501,900	230,000	60,000	1,791,900
13년이상	1,676,920	250,000	60,000	20,000	2,006,920	1,501,900	250,000	60,000	1,811,900
14년이상	1,676,920	250,000	60,000	20,000	2,006,920	1,501,900	250,000	60,000	1,811,900
15년이상	1,676,920	250,000	60,000	20,000	2,006,920	1,501,900	250,000	60,000	1,811,900
16년이상	1,676,920	250,000	60,000	20,000	2,006,920	1,501,900	250,000	60,000	1,811,900
17년이상	1,676,920	250,000	60,000	20,000	2,006,920	1,501,900	250,000	60,000	1,811,900
18년이상	1,676,920	250,000	60,000	20,000	2,006,920	1,501,900	250,000	60,000	1,811,900
19년이상	1,676,920	250,000	60,000	20,000	2,006,920	1,501,900	250,000	60,000	1,811,900
20년이상	1,676,920	250,000	60,000	20,000	2,006,920	1,501,900	250,000	60,000	1,811,900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지급

붙임 3

근속년수별 장기근무가산금

(단위 : 원)

근속년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	5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5	6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6	6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7	7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8	7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9	8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0	80,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1	90,000	19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2	90,000	190,0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13	100,000	19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4	100,000	190,000	250,000	270,000	270,000	270,000
15	110,000	190,000	250,000	290,000	290,000	290,000
16	110,000	190,000	250,000	310,000	310,000	310,000
17	120,000	190,000	250,000	310,000	330,000	330,000
18	120,000	190,000	250,000	310,000	350,000	350,000
19	130,000	190,000	250,000	310,000	350,000	370,000
20	130,000	190,000	250,000	310,000	350,000	390,000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②

**제자리걸음 교육부대책, 전국제각각 처우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해법이다!**

- 펴낸이 : 국회의원 유은혜
 - 함께만든이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펴낸날 : 2016.9.
-

